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허훈 의원 외 29명

나. 의안번호 : 제2954호

다. 제출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3. 8. 14.

## 2. 제안사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경감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에

대하여 경감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 최대 경감 비율(5%)을 신설함(안 별표 1)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0. ~ 2025. 8.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sup>1)</sup>

○ 제출의견 : 수정가결

- 휴업일에 대한 경감 규정(감축프로그램)이 부재하여 5% 경감하는 것에는 동의
- 다만, 경감 대상시설을 3,000 $m^2$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3,000 $m^2$  미만 시설물 소유자와 차별적용 우려가 있어, 시

---

1) 교통정책과-13910호('25.8.25.)

설물 규모에 따른 경감 대상 기준을 삭제함

- 또한, 이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 개정안) 3,000 $m^2$  이상 시설물 소유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한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내 경감
  - 수정안) 제2조(정의) 4호 차목 및 제6조(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의 별표1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경감률 결정통보서 등 별지 1~3호 서식 및 시행일을 2025.10.1.로 수정(제332회 조례 공포예정일 : '25.9.29.)

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

| 프로그램         | 대상      | 이행기준                                       | 최대경감비율             |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시설물 소유자 | ○ 법정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평일기준)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 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 내 |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매월 2일 이내 시행하는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5% 범위 내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sup>2)</sup>에서는 시장이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승용차 부제, 주차수요 관리,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활동(프로그램) 시행시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sup>3)</sup>할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

- 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m^2$ 이상 시설물 소유자
- 산정기준 : 부담금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times$  단위부담금( $m^2$ )  $\times$  교통유발계수
  -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해당년도 7. 31 / 납부기간 : 매년 10. 16. ~ 10. 31

○ 참고로 서울시는 '24년에 2,488억 68백만원을 부과하여 2,443억 10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sup>4)</sup>하였고, 536억 86백만원을 경감한 것으로 집계됨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시설 중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매월 2일 이내 시행하는 3,000 $m^2$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sup>5)</sup>에 따라 구청장이

4)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당해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부과금액    | 징수금액    | 경감금액   | 채납금액   | 결손금액 |
|------|---------|---------|--------|--------|------|
| 2024 | 248,868 | 244,310 | 53,686 | 15,969 | 187  |
| 2023 | 244,062 | 239,317 | 45,376 | 14,763 | 500  |
| 2022 | 242,539 | 239,285 | 41,558 | 12,460 | 195  |
| 2021 | 237,626 | 234,472 | 52,014 | 13,313 | 276  |
| 2020 | 168,519 | 166,146 | 95,869 | 12,305 | 461  |

※ 경감금액 : 시설물 미사용,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재난발생 등 해당 시 부담금 경감혜택 제공

※ 결손금액 : 무재산 등으로 인한 미납료 및 시효소멸(시효 5년) 시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하여 결손 처분

※ 채납·결손금액은 누계기준

대형마트(대규모 점포)<sup>6)</sup>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고, 구청장은 조례<sup>7)</sup>를 통해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휴업 시 대형마트 등 시설물 주변에 교통혼잡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일률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다소 과도한 조치로 보여질 수 있음

- 또한 자율휴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법정규정에 따른 의무휴업과 다소 성격이 다르나 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 유발을 경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를 현행 조례의 교통유발 감축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은

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생략>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7) 25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 운영 (예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1,000 $m^2$  이상 3,000 $m^2$  미만의 시설물은 제외하고 3,000 $m^2$  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경감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대형마트<sup>8)</sup>와 백화점 위주 경감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조례가 개정되어도 실제 부과·징수업무 등은 자치구에서 이행<sup>9)</sup>하고 있어 관련 조례 별지 등 행정식과 시행일을 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휴업과 자율휴무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휴업(휴무)일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차등하고 있고, 면적에 따른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음

8) 서울시 대형마트(3,000 $m^2$  이상) 점포 현황

(단위:개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업체명 | 계  | 이마트(주) | 홈플러스(주) | 롯데쇼핑(주) | (주)코스트코 | 농협하나로마트 | (주)이랜드리테일 |
|-----|----|--------|---------|---------|---------|---------|-----------|
| 점포수 | 68 | 25     | 18      | 16      | 4       | 4       | 1         |

※월 2회 의무휴업 시행(농협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으로 의무휴업 적용 제외)

※백화점은 별도 통계 없음

9)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경감비율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조례 현황(예시)

| 조례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 참여자        | 이행기준(조건)                                                                                                                     | 경감비율                                                                                                   |
|----------------------------------------|--------------------|------------|------------------------------------------------------------------------------------------------------------------------------|--------------------------------------------------------------------------------------------------------|
| 인천광역시<br>교통유발<br>부담금 경감<br>등에 관한<br>조례 | 의무휴업<br>또는<br>자율휴무 | 시설물<br>소유자 | ○ 매월 2일 이내 시행<br>○ 매월 3일 이상 시행                                                                                               | · 5%<br>· 10%                                                                                          |
| 대구광역시<br>교통유발<br>부담금 경감<br>등에 관한<br>조례 | 의무휴업<br>또는<br>자율휴무 | 종사자<br>이용자 | ○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업<br>○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br>○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업(휴무) 시행 | · 매월 2일 시행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br>· 매월 3일 시행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8<br>· 매월 4일 이상 시행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 대전광역시<br>교통유발<br>부담금 조례                | 의무휴업<br>또는<br>자율휴무 | 이용자        | ○ 매월 2일 이내 시행<br>○ 매월 3일 이내 시행<br>○ 매월 4일 이상 시행                                                                              | · 부담금의 100분의 5<br>· 부담금의 100분의 10<br>· 부담금의 100분의 15                                                   |
| 광주광역시<br>교통유발<br>부담금 조례                | 의무휴업<br>또는<br>자율휴무 | 규정<br>없음   | ·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업<br>·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br>·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업(휴무)시행  | · 5(매월 2일 시행시)<br>· 8(매월 3일 시행시)<br>· 10(매월 4일 이상 시행시)                                                 |